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』의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』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

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,

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 증진을 위한
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.

- 이에 근로지원인, 보조공학기기, 이동 편의와 같이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

-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
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,
안 제5조에는 교육감이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고,
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.
안 제8조에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